



파운틴 밸리 시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관한 방침

- 1. 방침의 적용.**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대한 본 방침은 (본 "방침")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대한 시정부 계정과 동일한 고지서에 청구되는 기타 서비스에 전부 적용된다. 6 항에 규정된 법은 제외하고, 본 방침은 비 주거용 서비스 계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방침이 시정부의 다른 규칙, 규정, 방침과 상충하는 범위에서 (조례안은 제외) 본 방침으로 규제한다.
- 2. 연락처.** 수도 고지서에 대한 질문이나 도움은, 시정부의 고객센터 직원에게 (714) 593-4420 으로 연락한다. 고객은 시청의 고객센터 데스크에 근무시간에 찾아가도 된다. 시청은 10200 Slater Avenue 에 위치하고 있다.
- 3. 요금청구 절차.** 수도요금은 2 개월에 1 번씩 시 정부에 납부한다. 모든 고지서는 받고 나면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에 나온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지서는 체납으로 간주한다. 수도고지서는 고객에게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로부터 이십일 오후 5 시까지 수도청구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된다. 이십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고지서는 이튿날 근무일 오후 5 시 이후에 체납으로 간주된다. 벌금으로, 요구된 시기에 수도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게 7% 연체료나 10 달러 중 더 큰 금액을 부과한다.
- 4. 미납으로 인한 수도서비스의 중단.** 고지서가 최소한 육십(60)일이 체납된 경우, 시정부는 서비스 주소에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고 중단 수수료를 부과한다.

4.1 고객 통지서. 시정부는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한 이십(20)일 전에 기록상 고객에게 우편 통지서를 제공하게 된다. 통지서에 다음 내용이 나오게 된다.

- (a)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
- (b) 체납 금액
- (c)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요금의 납부일이나 납부 약정 체결일
- (d) 고객이 서비스나 요금에 대한 불만신고를 시작하거나 조사나 항소를 신청하는 절차
- (e) 고객이 납부연기, 할부상환, 별도납부일정 등을 포함하는 별도납부약정을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파운틴 밸리 시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관한 방침

- (f)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는 절차
- (g) 고객이 납부약정을 신청하거나 시정부에서 추가 정보를 받아보는 전화번호

4.2 입주자나 세입자 통지서.

(a) 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한 이십(20)일 전에 서비스 주소에 사는 입주자에게 통지서를 보낼 것이다. (1) 시 정부가 단독주택, 다세대 거주용 건물, 모빌홈 파크, 농장 노동캠프에 계량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공급하고 주인,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이며, 주인, 관리인, 운영자가 거주지의 입주자가 아니다. 혹은 (2) 기록상 우편주소의 고객이 서비스 주소와 같지 않다. 통지서는 "입주자" 앞으로 보내게 되며, 상기 4.1 항에 규정된 정보가 나오게 되고, 주거용 입주자가 체납된 계정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시 정부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입주자가 시 정부의 고객이 되는 약정은 하단 9 항에 규정되어 있다.

(b) 시 정부가 다세대 거주용 건물, 모빌홈 파크, 농장 노동캠프의 영구적 주거용 건물에 매스터 계량기로 수도를 공급하고 주인,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이면, 시 정부는 계정은 체납 상태이고 서비스가 통지서에 나온 날짜로 종료되는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이십(20)일 전에, 통지서를 유닛 문마다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리는 성실한 노력을 할 것이다. 통지서를 유닛 문에 게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면, 시 정부는 접근가능한 공동구역과 구조물이나 구조물들의 입구마다 두 개(2) 통지서 사본을 게시하게 된다. 통지서에서 주거용 입주자가 체납된 계정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시 정부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서비스 종료를 막거나 서비스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입주자가 해야하는 것이 통지서에 자세히 나오게 된다. 월 서비스 추정 요금; 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해 입주자를 도와줄 시 정부 직원의 직무, 주소, 전화번호; 카운티 변호사 협회가 추천한 유자격 법률서비스 프로젝트의 주소나 전화번호. 입주자가 시 정부의 고객이 될 약정은 하단 9 항에 규정되어 있다.

4.3 직접 방문이나 전화 통보. 시 정부는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한 칠(7)영업일 전에 고객의 건물에 사는 기록상 고객이나 성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적절하고 성실한 노력을 하게 된다. 시 정부는 본 방침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납부연장이나 기타 납부약정의 가능성 등 미납으로 인한 수도서비스의 중단을 피하는 방법을 의논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파운틴 밸리 시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관한 방침

4.4 서비스 주소에 통지서 게시. 시 정부가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 서비스 주소에 사는 고객이나 성인과 연락이 안될 경우, 시 정부는 주거용 서비스의 임박한 중단 통지서와 본 방침의 사본을 서비스 주소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오는 성실한 노력을 할 것이다.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한 사십팔(48)시간 전에 거주지에 통지서와 본 방침의 사본을 두고 올 것이다.

- (a) 고객의 이름과 주소
- (b) 체납금
- (c)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납부금이나 납부약정을 설정해야 하는 날짜
- (d) 해당될 경우 고객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절차
- (e) 고객이 납부약정을 신청하거나 시 정부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아볼 전화번호

4.5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게 되는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 정부는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 (a) 하단 5.1 항에 나온 고객 분쟁이나 항소를 시정부가 조사하는 과정
- (b) 고객의 납부금은 하단 7 항에 의거하여 시 정부가 허가한 연장, 할부상환, 별도납부일정을 따르고, 고객은 승인된 납부약정을 준수하는 기간

4.6 매스터 계량기로 받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을 상황. 만약 시 정부가 다세대 거주용 건물, 모빌홈 파크, 농장 노동캠프의 영구적 주거용 건물에 매스터 계량기로 수도를 공급하고 건물, 구조물, 파크의 주인,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인 경우, 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 (a) 고객의 부채가 다른 공공기업에게 진 빚이거나, 체납 계정이나 부채에 상당하는 책임이 시정부의 수도공공부서가 아닌 공공기업과 발생한 경우;
- (b) 고객이 소유하고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건물과 체납 계정이 관련된 경우;
- (c) 종료로 인해 주거용 입주자나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된다고 보건부장이나 건물담당자가 증명하는 경우

파운틴 벨리 시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관한 방침

4.7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게 되는 의료적 경제적 특수 상황

- (a) 다음 상황에 전부 부합되는 경우, 시 정부는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 (i) 수도 공급 중단으로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의 거주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 사실을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가 면허가 있는 주치의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제출한다.
 - (ii) 고객은 시정부의 정상 청구주기에 거주용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고객은 정상 청구주기에 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a) 고객의 가족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은 정부보조의 현재 수혜자인 경우 (예: 캘웁스, 캘프레시, 일반보조금, 메디칼, 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혹은 (b) 위증의 처벌 하에 고객이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한 경우이다
 - (iii) 고객이 체납 요금에 대해 별도납부약정을 맺을 의사가 있다.
- (b) 상기 상황을 전부 충족한 고객에 대해, 시 정부가 재량으로 고르는 다음 방법 중 한 가지를 고객에게 제안한다. (1) 납부 기한 연장 (2) 미납잔액 할부상환; 혹은 (3) 별도납부일정. 시정부의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서류와 시 정부의 납부필요성을 감안하여 가장 적절한 납부약정을 정하게 된다.
- (c) 상기 (a)관에 서술된 상황을 증명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고객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이후, 시 정부는 서류를 검토하게 된다. (1) 시정부가 선택한 별도납부일정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별도약정에 참여할 고객이 서명한 동의서를 신청한다. (2)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혹은 (3) 고객이 (a)관에 서술된 상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통보한다.
- (d) 본 조항에 의거하여 별도납부약정을 허가 받은 고객이 육십(60)일 이상 다음 중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시 정부는 수도서비스를 중단한다: (a)

파운틴 밸리 시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관한 방침

연장납부일까지 미납요금을 납부한다 (b) 할부상환일정에 의거하여 할부금액을 납부한다. (c) 별도납부일정에 따라 지불금액을 납부한다. (d) 수도서비스 요금을 납부한다. 시정부는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한 오(5)영업일 전에 서비스 주소에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서비스 중단 의사 최종통지서를 게시할 것이다. 최종 통지서로 고객이 시정부의 조사나 재고에 대한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4.8 서비스 중단 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정부 사무실이 공공근무를 하지 않는 날짜에 미납으로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4.9 서비스 복구. 수도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은 서비스 복구를 위해 시 정부에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연락한다. 다음을 납부해야 복구가 된다 (a) 해당 이자나 벌금 등 기일이 경과된 금액 (b) 해당될 경우 8.1 항의 제한사항에 따른 재연결 비용 (c) 시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

5. 잘못된 고지서를 항의하거나 항소하는 절차

5.1 불만신고를 시작하거나 조사를 신청하는 시기. 분쟁된 고지서를 받고 오(5)일 내에 고지서 요금에 대해 불만신고를 시작하거나 조사를 요청한다. 본 5.1 항의 목적으로만,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오(5)일이 지나거나 이메일인 경우 발송하자마자 고객이 고지서를 받았다고 간주한다. 고객은 (714) 593-4420 으로 전화하거나 파운틴 밸리 시정부 10200 Slater Avenue, Fountain Valley, CA 92708 에 신청문서와 보충문서를 제출하여 불만신고를 시작하거나 조사를 요청한다.

5.2 시정부의 재고. 적시 불만신고나 조사 요청은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이 검토하게 되고 분쟁을 접수받고 십사(14)일 내에 고객에게 판결문을 제공한다. 7 항에 의거하여 고객이 연장, 할부상환, 별도납부일정을 받는 여부를 참작하게 될 것이다. 시 정부는 재량으로 시기를 놓친 불만신고나 조사 요청을 검토한다. 하지만 그러한 불만신고나 요청은 항소하지 못한다.

5.3 시정부 관리자에게 항소. 본 5 항에 따라 적시에 불만신고나 조사 요청을 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은 고객은 시정부가 판결문을 발송하고 십사(14)일 내에 시 서기에게 항소통지서를 제출하여 시 관리자에게 판결을 항소한다. 만일 응답을 발송한 날짜로부터 십사일 내에 시 서기가 항소를 받게 되면, 항소는 시 관리자에게 전달된다. 시 관리자는 항소를 검토하고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피해 받은 고객이나 직원에게 판결서 편지를 전달한다. 시 관리자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파운틴 밸리 시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관한 방침

5.4 실제 수도 사용에 대한 고객의 책임. 고객은 수도누출 등 건물의 실제 수도사용에 전부 책임이 있다. 이것은 건물에 관개시스템을 유지하고 가정용 배관에 대한 책임이며, 적시에 누출을 발견하고 수리하여 누출로 인한 사용위험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고객은 하단 6 항에서 규정한 수도 손실 조정에 자격이 있을 수 있다.

6. 수도 손실 조정

6.1 조정 요청; 필수 서류 5.4 항에도 불구하고, 시정부는 고객의 문서 요청에 따라, 기계 오작동, 찾지 못한 수도누수, 수도 도난, 기물파손, 설명이 불가능한 수도손실이나 특이한 긴급상황 등 고객의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수도 손실인 경우 고객의 고지서를 조정한다. 수도꼭지 누수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을 것이다. 고객의 요청은 수리 고지서나 적절한 서류로 뒷받침해야 한다. 본 6 항은 시 정부의 주거용과 비 주거용 계정에 해당한다.

6.2 시정부의 결정 조정을 허가하는 여부의 결정은 시의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의 단독권한으로 하게 된다. 판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하지 못한다. 판정을 내리는 시 정부는 수도 손실의 원인, 고객이 발견할 기회, 그것과 관련하여 고객의 부주의나 잘못, 수도 손실을 발견하여 중지시키고 수리하는 민첩함 등을 참작한다. 고객이 조정을 받을 자격에 대해 조사를 한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작하게 된다.

- (a) 고객의 의도적이거나 부주의한 행동, 혹은 더 높은 수도요금과/혹은 하수도 요금, 수도 누수 통보, 눈에 보이는 수도, 누수가 있는 것을 고객이 분별하여 발견할만한 다른 요소 등 경고신호에 고객이 무반응을 보여서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b) 고객의 건물에 발생한 수도 손실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책임진 제 3 자가 없다.
- (c) 늘어난 요금청구, 편지, 문고리, 기타 방법으로 시 정부가 통보한 이후, 고객이 과도한 사용의 원인을 알아내고 지체 없이 고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 (d) 고객은 수도누수를 발견하거나 통보를 받자마자 즉시 고치는 조치를 취하였고, 누수를 수리한 충분한 증거를 시 정부에 전달하였다. (수리 서비스의 고지서 사본 등).

6.3 수정금액 계산: 허가된 경우, 고객의 고지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될 것이다.

파운틴 벨리 시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관한 방침

- (a) 질문의 서비스 공과금 고지서의 요금전액과 그 고지서의 바로 이전 청구주기의 공과금 전액을 감한 금액으로 초과 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 (b) 고객은 (a)관에 계산된 금액의 절반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시 정부는 고객의 계정에 나머지 절반을 크레딧으로 주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시 정부는 \$300 이상의 크레딧을 주지 않는다.

6.4 추가 상황.

- (a) 수도 손실 수정은 5년마다 1번 수정으로 제한할 것이다. 수도 손실조정이 허락된 마지막 청구 주기 말부터 5년 기한이 시작된다.

7. 납부연장과 기타 별도납부약정.

7.1 연장이나 별도납부약정을 신청하는 시기. 고객이 정상납부기간에 고지서 요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되면, 본 7항에 규정된 연장이나 기타 별도납부약정을 고객이 신청해도 된다. 시정부가 서비스 중단 통지서를 발송하고 십삼(13)일 내에 고객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이 신청서를 재고하게 된다. 단독 재량으로, 시정부의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은 본 7항에서 서술한 십삼(13)일 전이나 이후에 본 7항에서 규정한 연장이나 별도납부약정 신청을 재고한다. 연장이나 별도납부약정에 대한 시 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시 관리자에게 항소하지 못한다. 납부약정을 맺도록 유도하거나 시 정부에게 이득이 생기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시 정부의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은 단독재량으로 계정에 적용된 한 개 이상 연체료를 면제할 수 있다.

7.2 연장. 시정부가 허가한 경우, 고객의 미납잔액 납부는 요금잔액의 본래 납부일로부터 육(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으로 임시 연장된다. 고객에게 어느 정도 연장기간을 제공하게 되는지는 시 정부의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고객은 시 정부가 정한 날짜까지 미납잔액을 전부 완납해야 하며 후속 청구주기 동안 누적되는 수도요금을 전부 현상유지해야 한다.

7.3 할부상환. 시 정부가 허가하는 경우, 시 정부의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이 내린 결정에 따라 고객의 미납잔액은 십이(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분납해야 한다. 할부상환이 허가될 경우, 미납잔액은 분납기간의 납기월 수로 나누게 되며, 완납할 때까지 그러한 금액을 소비자의 한달 수도요금에 매월 합산한다. 분납기간 동안, 고객은 후속 청구주기에 누적된 수도요금을 전부 현상유지해야 한다. 시정부의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의

파운틴 밸리 시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관한 방침

단독재량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납기간을 십이(12)개월 이상으로 연기할 수 있다.

7.4 별도납부일정. 시 정부가 허가하는 경우, 시 정부의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이 내린 결정에 따라 고객의 미납잔액은 십이(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별도납부일정에 따라 분납해야 한다. 허가될 경우, 별도납부일정은 시정부의 정해진 납부일과 겹치지 않는 한 정기적 일괄 납부를 허용하며, 시의 정기 납부일보다 더 자주 납부하거나 덜 납부할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별도약정일정의 기간 동안, 고객은 후속 청구주기에 누적된 수도서비스 요금은 전부 현상유지해야 한다.

7.5 불이행. 본 7 항에 의거하여 납부약관을 허락 받은 소비자가 납부하지 않고, 본래 고지서가 체납되고 최소한 60 일이 지났으면, 시 정부는 수도서비스를 중단한다. 그러한 경우,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최소한 오(5)영업일 이전에 최후의 서비스중단 의도 통지서만을 소비자의 주거지에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서비스를 중단한다. 최종 통지서로 고객이 시 정부의 조사나 재고를 받을 자격이 생기지 않게 된다.

8.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

8.1 재연결 비용의 한도와 이자 면제. 가구 소득을 연방정부 빈곤선의 200 퍼센트 이하로 증명한 거주용 고객에게, 시 정부는 정상 영업시간에 다시 연결하는 비용을 오십달러(\$50)로 제한하고,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이면 백오십 달러로(\$150) 제한하게 된다. 시 정부의 재연결 비용이 실제로 금액을 초과할 때만 한도를 적용한다. 2021 년 1 월부터 노동청 통계자료의 도시 소비자 (CPI-U) 물가 지표에 변동에 따라 한도는 매년 조정된다.

8.2 자격조건. 시 정부가 거주용 고객의 가구 소득을 연방정부 빈곤선의 200 퍼센트 이하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소비자의 가족원 중 누구든지 다음 정부 보조금의 현재 수혜자이다: 켈웍스, 캘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칼, SSI/ 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 혹은 (b) 연간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퍼센트 이하라고 신고한다. 소비자가 이 중 한 가지 상황을 증명할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9. 입주자나 세입자가 시 정부의 고객이 되는 절차.

파운틴 밸리 시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관한 방침

9.1 해당성. 본 9 항은 주거용 서비스주소의 건물주, 집주인,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으로 나오고 기록상 고객은 건물에서 수도를 사용하는 주민이 아니며 미납으로 인한 수도서비스를 중단하는 의사 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9.2 시 정부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 세입자/입주자가 시의 고객이 되는 서비스 약정에 동의하고 시의 법규와 규정을 충족하는 한, 시 정부는 실제 거주민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세입자/입주자 중 한 명이나 한 명 이상이 시정부가 만족할 만큼 계정의 추후 요금에 대한 책임을 인계하는 경우, 혹은 시의 법규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자의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중단할 물리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시 정부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9.3 입주 증명. 체납 계정의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객이 될 자격이 되려면, 입주자는 기록상 체납된 계정 고객이 현재나 과거에 거주지의 집주인, 관리인, 대리인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방법은 임차계약서, 임대계약서, 월세영수증, 입주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는 정부문서, 민사법 1962 항에 의거하여 공개된 정보 등을 시 정부의 재량으로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다.

신용을 쌓는 방법. 과거 특정기간 동안 서비스가 있었던 조건으로 시 정부와 신용을 쌓는 경우, 과거 기간 동안 거주증명과 적시에 월세를 납부한 증명으로써 균등요건을 충족한다.

9.4 월세납부 공제. 공공기업법 10009.1(d)항에 의거하여, 본 9 항에 의거하여 시의 고객이 되는 입주자와 월세납부 등 정기적 납부금은 주거용 수도요금을 포함하고, 그러한 요금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으면, 입주자가 이전 납부기간 동안 시 정부에 납부한 적절한 수도요금을 추후 월세에서 공제해도 된다. 공공기업법 10009.1(d)항에 의거하여 본 조항은 단지 기존 법령의 서술문이다.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독자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립하지 않으며 시 정부는 집행 의무가 없다.

10. 노인과 독립적 성인을 위한 제 3 자 통지 서비스. 시 정부는 65 세 이상이나 독립적 성인에게 (복지제도법 15610(b)(1)항에 정의된 바) 주거용 고객에게 제 3 자 통보 서비스를 하게 되며, 시 정부는 고객의 계정이 만기가 경과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고객이 정한 사람이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통보를 시도할 것이다. 통지에는 서비스 종료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된다. 시 정부는 서비스를 종료하기 최소한 십(10)일 전에 지정된 3 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파운틴 밸리 시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관한 방침

참여하려면, 고객은 시 정부의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제 3 자 통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지 서비스로 인해 제 3 자가 연체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서비스 종료를 막거나 연기하지 않는다.

11. **특정 통지문의 언어.** 본 방침의 4 항과 7.5 항에 의거한 통지서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 베트남어, 한국어, 시의 서비스 구역에서 십(10%)퍼센트 이상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로 제공된다.

12. **기타 구제책.** 수도서비스의 중단에 추가적으로, 시 정부는 수도요금의 미납에 관한 법률이나 형평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구제책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국한하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 부동산에 선취권을 설정하여 체납금을 담보물로 정하는 것, 신청이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 수금업체에 미납 금액을 회부하는 것 등이다.

13. **다른 고객의 위반으로 인한 수도서비스의 중단.** 시 정부는 미납 외에 시 조례안, 규칙, 규정 위반으로 수도서비스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

14. **발생한 수수료와 요금.** 본 방침에 분명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시의 규칙, 규정, 방침에 의거하여 체납요금 등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고객으로 인해 발생된 수수료와 요금은 정해진 바대로 납부해야 한다.

15. **시 정부 직원의 결정.** 본 방침으로 시 정부의 경리부장이 수용한 결정을 대리인이 수용할 수 있다.